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서일준 · 이현승 · 김상훈
임종득 · 김소희 · 이철규
서천호 · 정동만 · 신성범
김은혜 · 성일종 · 엄태영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 · 지정 ·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 · 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 · 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을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사업 별로”를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로, “사업별 인증”을 “분야별 인증”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물류사업”을 “물류사업 및 활동”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물류신기술 · 첨단물류시설등으로”를 “물류신기술 · 첨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이 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⑥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60조의3, 제60조의4 및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큰기업은”을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는”으로 한다.

제68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취소
제69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0조 중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71조 제7항 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서 · 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인증서 · 등록증”으로 한다.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p> <p>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u>물류사업별로</u> 운영 할 수 있으며, 각 <u>사업별 인증</u>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p> <p>① ----- ----- <u>지</u> <u>속가능한 물류산업 발전을 위</u> <u>하여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u> <u>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u> <u>주기업을 -----.</u></p> <p>② ----- ----- <u>세부 우수분야에 따</u> <u>라 ----- 분야별 인증</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p> <p>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u></p>	<p>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p> <p>①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물류사업 및 활동-----</u></p>

<p>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제42조(<u>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u>)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u>인증우수물류기업</u>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p> <p>① · 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u>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으로</u>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p> <p>-----</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2조(<u>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u>) -----</p> <p>----- <u>인증우수물류기업</u> -----</p> <p>-----</p> <p>-----</p> <p>-----</p> <p>-----</p> <p>-----.</p> <p>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 <u>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u> -----</p> <p>으로 -----</p> <p>-----.</p> <p>④ (현행과 같음)</p>
---	--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이 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신 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원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삭 제>

<삭 제>

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삭 제>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삭 제>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 ·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 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

-----.

제68조(청문) -----

-----.

<p>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 략)</p> <p><u>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u></p> <p>5. ~ 8. (생 략)</p> <p>② (생 략)</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5.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